

정보화업무규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 제351호

정보화업무규정

확 정 일 : 2026년 01월 29일

시 행 일 : 2026년 02월 03일

정보화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 세부지침」 제정을 통한 규정 체계를 조정하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예정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사장으로 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명확화하며, 자문위원 구성 근거 마련
- 나. 정보화 사업계획과 정보화 시행계획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전협의 신청 시기 및 검토 기한 명문화
- 다. 정보화업무 운영성과 측정대상 기준 변경(구축 후 3년→ 1년)
- 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예정에 따른 인공지능 도입시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 신설
- 마. 「정보화사업 세부지침」 제정에 따른 중복항목 삭제

정보화업무규정

제정 2009.10.01 규정 제 18호

개정 2026.01.29 규정 제3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 및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개정 2026.01.29>

② 공사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정보화총괄부서”란 공사의 정보화 정책, 정보화계획, 정보화사업, 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07.24.>
6. “업무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의 정책, 지침, 절차, 기준 수립 및 업무 개선사항 도출 등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정보시스템 등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운영·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7. “정보화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자원”이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업무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9.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6.01.29>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 제4조(정보화책임관)** ① 공사는 공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CIO)을 둔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5조의 정보화총괄부서를 관장하는 본부의 장으로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한다.

1. 공사 정보화기본계획의 승인
2. 공사 정보화시행계획의 승인
3. 공사 정보화 정책·사업의 총괄 조정
4. 그 밖에 정보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④ 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정보화총괄부서) ① 공사의 정보화계획, 정보화사업, 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정보화총괄부서를 둔다. <개정 2024.07.24.>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조정
3. 정보화사업 총괄·조정·지원, 사전협의, 성과관리 <개정 2026.01.29>
4. 정보자원의 도입·설치·운영 총괄, ICT인프라센터 운영 총괄
5. (삭제) <개정 2024.07.24.>
6. 정보화 관련 규정 및 절차 관리
7. 정보화교육 등 역량 강화
8. 그 밖에 공사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공사 정보화업무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사장, 부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각 본부 총괄부서의 장(기획조정실장 포함) 또는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1.29>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6.01.29>

④ 안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내·외부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01.29>

제7조(정보화추진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01.29>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01.29>

3. 신규 정보화사업 등 「정보화사업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6.01.29>

4. 삭제 <개정 2026.01.29>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화사업 세부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6.01.29>

제8조 삭제 <개정 2026.01.29>

제9조(정보화업무 자문) ① 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심의심사비 및 자문료 지급기준」 등 공사의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08.10>

제3장 정보화계획 및 정보화예산

제10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경영 여건 및 정보기술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보화 관련 대·내외 환경 및 ICT기술 동향분석
2. 정보화 현황분석
3.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4. 이행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5. 소요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업무주관부서의 요구사항

을 검토·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9>

제11조(정보화기본계획 변경)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9>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변경대상이 단순 자료 누락, 계산오류 또는 자구·도표·그림의 부분수정 등 기본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시행계획 수립)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다음연도 예산 확정 후 1개월 내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24.>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1.29>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1.29>

④ 삭제 <개정 2026.01.29>

제13조(정보화예산)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연도 정보화예산에 대하여 정보화예산 요구서(“이하 “예산안”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9>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9>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
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각 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예산 편성 시 제3항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예산 검토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14조(정보화사업부서 지정)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업무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서 간 상호협의를

통하거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조정하여 정보화사업부서를 정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사업계획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9>

② 사업계획에는 전담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를 분담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화사업 세부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6.01.29>

제16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시행방침 수립 1개월 전까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9>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해 정보화사업의 적정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필요한 자료 확보 또는 기술적 검토 등으로 기간 내 회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01.29>

③ 삭제 <개정 2026.01.29>

④ 삭제 <개정 2026.01.29>

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화사업 세부지

침」에 따른다. <신설 2026.01.29>

제17조 삭제 <개정 2024.07.24.>

제17조의2(과업심의위원회 구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 위원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8.10]

제17조의3(과업심의위원회 기능) ①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1. S/W사업 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S/W 개발 사업에 대한 적정 사업 기간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4. S/W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5. 과업변경 심의 대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삭제 <개정 2026.01.29>

③ 삭제 <개정 2026.01.29>

④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보화사업 세부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6.01.29>

[본조신설 2021. 8. 10] [조의 제목개정 2026.01.29]

제18조 삭제 <개정 2021.08.10>

제19조 삭제 <개정 2021.08.10>

제20조(사업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발주, 기술성평가, 계약, 일정관리, 과업변경의 적정성, 산출물 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위탁기관에 정보시스템을 위탁한 경우, 위탁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안 관리실태, 운영 및 서비스 상태,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개발·운영에 있어 표준화 및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를 통해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추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정보화사업 완료)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개시 전 철저히 검수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완료 후 후속 조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사업 세부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1. 8. 10> <개정 2026.01.29>

제22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구축 후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 등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9>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유형을 확정하여 개선 및 점검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자원 관리 등

제23조(ICT인프라센터 운영)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의 보호를 위해 독립성이 확보된 별도의 공간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ICT인프라센터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ICT인프라센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본사의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속된 건물 및 기기를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ICT인프라센터 관리책임자 업무) ① ICT인프라센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정보자원 및 부대설비 점검
2. 정보자원 장애접수 및 통지
3. 정보자원 성능유지 모니터링 및 통제
4. ICT인프라센터 출입통제 및 반입·반출 관리
5. ICT인프라센터내의 적정 온·습도 및 청결유지
6. 기타 ICT인프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ICT인프라센터 출입제한, 보호 대책, 백업 및 데이터관리, 업무 연속성 유지, 비밀유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정보화장비 도입 및 운영)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장비를 직접 도입할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9>

② 정보화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기존장비의 활용 및 도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정보화장비를 회수 또는 통제할 수 있다.

1. 정보화장비의 재배치를 통한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이 예상되는 경우
2. 컴퓨터바이러스·악성코드 등의 검색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원격으로 장애를 조치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4. 해킹 및 정보시스템 침해증상이 발견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경우
6. 정보화장비의 자산 현황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④ 정보화장비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정보화장비 자산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1.29>

[조의 제목개정 2026.01.29]

제25조의2(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 생성·수집·관리·이용·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데이터관리 규정」 및 「데이터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01.29]

- 제25조의3(인공지능 도입 및 운영)**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전 주기에 걸쳐 위험요인을 식별·평가·완화하고, 오류·오작동 등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인공지능 도입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01.29]

제26조 삭제 <개정 2024.07.24.>

제26조의2(정보보안) 정보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01.29]

제27조 삭제 <개정 2024.07.24.>

제27조의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01.29]

제28조(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직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
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
3. 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
4. 기타 정보화 관련 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교육에 소속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29>

제2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소프트웨어 진흥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7.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8.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10. 용역계약 일반조건

1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12. 개인정보보호법

1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2026.01.29>

부 칙 <2019.11.13>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10>

이 규정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7.24>

이 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1.29>

이 규정은 202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